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33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입법예고(2019.9.25. ~ 10.1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영어 및 창의마을(풍납, 수유, 관악)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감면기한(2019. 12.31.)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료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6호, 2019. 5. 2.>		부칙 < 제7116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사업인 서울페이로 시작했으나,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명칭이 변경(서울페이 → 제로페이)되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제로페이는 2010년 후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에 금융기관 및 기업이 내놓은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소상공인이 모두 구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적인 결제 시스템을 정부주도(중소벤처기업부)로 구축하는 정책임.
- ※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제로페이 결제자에게 2019.12.31.까지 사용료의 100분 5를 감면하고자 의안번호 572번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을 개정하였음.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5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어창의마을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개 시설(풍납·관악·수유 캠프)에서 총 499건, 8천 2백만원 규모의 제로페이 결제가 있었고, 약 413만원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음.

〈 영어·창의마을 제로페이 월별 결제 현황 〉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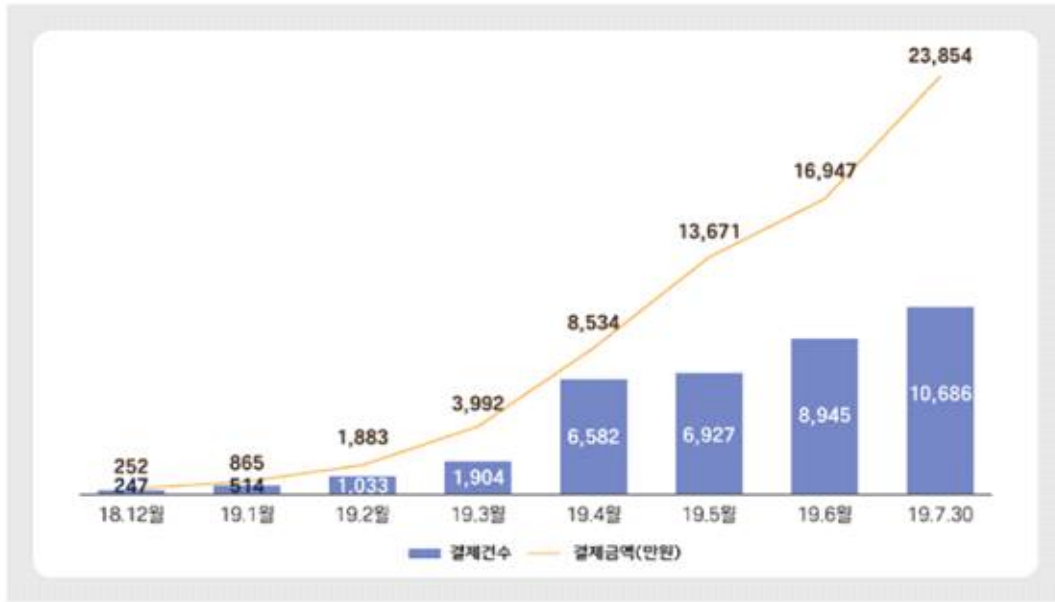
	결제건수			결제금액			감면액
	전체	제로페이	비율	전체	제로페이	비율	
소계	3,599	499	13.9%	532,388	82,575	15.5%	4,128
10월	714	138	19.3%	103,253	24,042	23.3%	1,202
9월	422	73	17.3%	51,716	9,240	17.9%	462
8월	622	126	20.3%	97,990	24,281	24.8%	1,214
7월	519	56	10.8%	89,701	9,931	11.1%	496
6월	777	78	10.0%	124,077	11,828	9.5%	591
5월	545	28	5.1%	65,652	3,253	5.0%	162

※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구성

- 평생교육국은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로페이 감면 중단시 시민의 불만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 영어·창의마을에 한정해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점보다 이용객의 사용료 감면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의 실적 또는 효과보다 ‘총 결제 건수 대비 제로페이 결제 비율’과 ‘총 결제액 대비 제로페이 결제액’을 제로페이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는바, 감면기간 연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로페이의 성과를 소상공인 부담 경감보다, 결제건수와 결제금액으로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대한 성과는 표시되고 있지 않음. 은행권 전자금융 결제수단별 결제액을 살펴보면, 제로페이는 0.01%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임.

〈 제로페이 추진성과 〉



출처 : 대한민국정부(정책위키:한눈에보는 정책, <http://www.korea.kr>)

〈 은행권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 〉

(단위:백만원)

결제수단	전자금융결제 수단별 결제액		
	합계	비율	월 평균
제로페이	14,946	0.01%	1,865
신용카드	65,635,898	55.10%	1,028,899
체크카드	52,274,700	43.89%	567,935
선불카드	264,265	0.22%	3,211
직불카드	816,022	0.69%	1,504
기타	106,126	0.09%	241
합계	119,112,027	100.00%	1,601,772

※ 출처 : 금융감독원

·조사기간 : 2018.12.20.~2019.8.16. ·조사대상 : 18개(시중, 특수, 지방, 인터넷전문)

·카드사가 개별법인인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신용·체크·선불카드 관련자료 제외

- 첫째, 영어·창의마을에서 제로페이 사용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시 (제286회 임시회, 2019.4.26.) 평생교육국은 약 1,200만원을 감면보존액으로 추계하였으나, 10월말 기준 감면보전에 사용된 금액이 4백만원에 불과하고, 12월말까지 지출될 감면 보전액이 6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밀한 비용추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영어·창의마을 사용자 제로페이 감면 손실액 추계 〉

	사업수익(17.1~12월)	감면 손실액(5%할인)	한시적 적용(8개월)
금액	1,223,973	18,360	12,240

※ 출처 : 제286회 임시회(2019.4.26.) 영어·창의마을 관련 평생교육국의 비용추계

- 둘째, 평생교육국은 개정 조례안을 예산심의회가 있는 회기에 제출하면서 2020년 감면손실 보전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본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영어·창의마을의 감면손실에 대해 보존할 수 없는바, 본 개정안에 대한 심의회가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셋째, 영어·창의마을의 단체입소자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에서 감면기간 연장의 이유로 제출한 이용경험 확대 및 민원제기 우려가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헌법은 실질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시혜적 입법재량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경우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단체입소자들의 감면 제외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헌법재판소 헌재 1999. 7. 22. 98헌바14

(가) 시혜적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이다.

-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② 시장은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를 소지한 청소년이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본인 부담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5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넷째, 제로페이 수수료 없다면 수익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도 없는 것이 마땅하나,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소득공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사용료 감면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추후 활성화를 위해 재차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바, 제로페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서울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수수료 체로 정책을 유지하는 한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1년 연장이 아닌 지속적·장기적 재원소요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제로페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만의 자치사무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가 그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3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6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16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u> 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16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2020년 12월 31일-----.</p>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입감소분 손실보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18년 개인결제액×30%(제로페이 이용자))×5%(이용료 감면)
- 한시적 적용 : '20.1~12(12개월)

구분	개인결제액 (18.1~12월)	'20년 제로페이 이용시 감면 손실 예상액 (5% 할인)	비고
금액 (단위 : 천원)	571,331	8,570	

4. 작성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원경진 (02-2133-3994)